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관련 규율대상 확대 〉
■ 윤재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923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윤재옥의원 대표발의(2209923)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관련 규율대상 확대(안 제2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 제38조 및 제51조)	2

□ 윤재옥의원 대표발의(220992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재옥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4. 17.
3. 회 부 일 : 2025. 4.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는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함.

그런데, 비인증사업자 또는 비인증사업자와 계약한 영업점의 경우 그 종사자는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에 따라 운전자격 확인, 범죄경력 조회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제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비인증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화물 배송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현행법 규제체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관련 규율대상 확대(안 제2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 제38조 및 제51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u> <u>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u>
5. “영업점”이란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u> 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구역을 할당받아 해당 구역 내에서 화물의 집화, 배송 등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5. ----- -----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u> ----- ----- ----- -----.
6.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생략) 나.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u> :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u>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	6. -----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u> -----

현행	개정안
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의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7. (생략) 제19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① (생략) ②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u>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이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u>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u> 또는 영업점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②·③ (생략)	----- ----- ----- 7.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u>----- ----- ----- ----- ----- ----- ----- -----. 제19조의3(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u>----- ----- ----- ----- ----- ----- ----- -----.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u>----- ----- -----.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9조의4(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 확인 등) ①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u>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 확인 등) ①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u> -----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u>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른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u> ----- ----- ----- -----.
③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u> 또는 영업점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③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u> ----- ----- -----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무) ① (생략)	제38조(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u>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게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u> ----- ----- -----.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제51조(과태료) ① -----

현행	개정안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9의2. (생략) 9의3. 제1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u> 또는 영업점 10. ~ 14. (생략) ② (생략)	----- -----. 1. ~ 9의2. (현행과 같음) 9의3. ----- ----- -----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u>----- ----- 10. ~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여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이 유효한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운전자격 확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이 법

현행	개정안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9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종사자가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하여야 한다.

가. 검토의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2021. 1. 26. 제정, 2021. 7. 27. 시행) 당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종전과 같이 자유업으로 운영하되, 일정한 영업수준을 만족하는 사업자를 제도권 내로 포섭하여 우수 업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제를 도입하였음.

그 이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및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사제한 사유와 운전자격을 확인하여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이 자유업으로 운영됨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및 그와 계약한 영업점에 대해서만 이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할 의무가 부과되었음.

지난 2022년 수행된 배달업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배달대행플랫폼은 51개로 조사되었으나, 2025년 6월 현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9개에 불과함.

이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그와 계약한 영업점에 대해서는 규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상황으로, 개정안은 규제대상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려는 것임.

다만, 이처럼 규제대상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려는 경우 현행과 같은 자유업 체계로는 법률적·실질적 관리가 불가하므로 신고제 또는 택배 서비스업과 같은 등록제 등의 도입과 병행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인증제로는 강제성을 갖춘 규제 적용이 곤란하고 비인증기업에 대해서는 법적 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관련 산업 성장과 함께 종사자 처우개선,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사업자 의무 강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증제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지난 5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현 인증제의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해당 연구용역은 2026년 2월까지 수행될 예정으로, 그 결과를 참고하여 개정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제2조제4호의2를 신설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있으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는 법 제2조제4호1)의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포함되는 개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조문 위치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 밖에 법 제39조는 개선명령 및 권고의 대상을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51조제9호의 2)는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하여야 하는 것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등 현행법에 종사자와 관련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포함한 규정들은 함께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

가. 택배서비스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제5조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한 자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받은 자

2) 제39조(개선명령 및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나. 관계기관 의견

1) 국토교통부

비인증사업자 및 비인증사업자와 계약한 영업점에도 종사자 및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은 생활물류서비스법 상 별도의 신고, 허가가 없는 자율업종으로, 새로운 정의를 신설하더라도 규제 대상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의 확정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현재 현행 인증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등록제 도입 등 비인증사업자에 대한 의무 부과 방안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동 연구를 통해 규제대상 범위 및 방식 등을 검토한 후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2)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 및 그와 계약을 체결한 영업점의 종사자는 현행법 상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에 해당되지 않아, 운전자격 확인, 범죄경력 조회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제들이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정의 및 대상을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과의
계약을 통해 화물의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소
화물의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다수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에 동의함.

문 의 처
02)6788-5580